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균성\*/송동수\*\*/함태성\*\*\*

## 차 례

- I. 머리말
- II.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 III.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
- IV. 사업장생활계폐기물법제의 개선방안
- V. 맺음말

## I. 머리말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매립지에서 단순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김광임 외,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환경부, 2003, 13면.

이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식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이 소각되지 않고 매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해줌으로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사용되어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칙상 사업장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해야 할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처리비용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이 극히 저렴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민간폐기물처리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사이에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가 왜곡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재검토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규율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체계

오늘날 폐기물은 다양한 성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분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처리방법에 의한 처리와 적절한 사후관리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규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sup>2)</sup>

1991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서 폐기물을 폐기물의 성상 즉 유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기까지 폐기물의 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었었다.<sup>3)</sup>

2) 김연태,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처리체계, 환경법연구 제25권 1호(2003. 9), 165면.

3) 독일폐기물법에서는 재활용(Verwertung) 혹은 처리(Beseitigung)해야 할 모든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파악

1995년 8월 5일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시 채택된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은 우선 폐기물의 발생원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된다.

‘생활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1.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일반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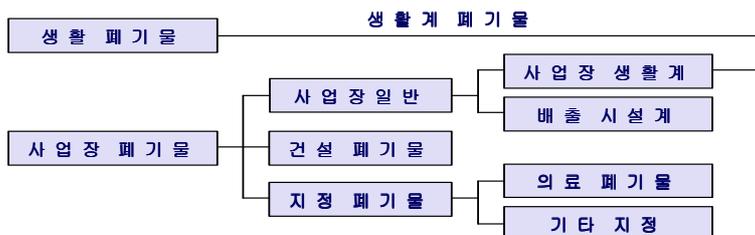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4호). 지정폐기물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 할로젠족유기용제, 비할로젠족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및페라카,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소각잔재물, 안정화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함유폐기물, 오니 등이 지정되어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폐기물의 관리체계 즉, 처리책임, 처리요금,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을 달리 규율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법에 의해 규율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등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각 관계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

하고, 이것들을 가능한 한 시장경제의 사이클 내부에 두는 한편,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처리의 대상으로 하는 등, 보다 철저한 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Vgl. Kloepfer, Umweltrecht (3.Auflage), 2004, S. 1202.



< 폐기물의 분류 >

##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sup>4)</sup>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나오고 있는데,<sup>5)</sup> 동 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폐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분류를 하게 된 것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이지만,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함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묶어서 생활계폐기물로

4)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2호),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호).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와 관련 별표5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시행령 제2조 7호 및 9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칭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폐기물통계 집계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묶어서 생활계폐기물로 지칭하고 있다.

###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sup>7)</sup>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sup>8)</sup>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재활용신고업체, 공공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sup>9)</sup>과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관할구역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자체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없다면 사

7)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9)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업장생활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Ⅲ.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

#### 1. 규정 형식상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즉, 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관리 책무부담, 폐기물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의 분류의 핵심적 내용(Wesentlichkeit)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나아가 의회유보의 원칙(Parlamentarvorbehalt)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의회유보의 핵심은 국가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은 의회가 직접 형식적인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즉 본질적인 행정작용은 의회법률의 유보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행정작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즉 법규명령으로의 위임도 가능하지만), 그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야 하며 법규명령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sup>11)</sup> 이러한 의회유보이론은 침해적 행정이든 수익적 행정이든 관계없이 법률이 오로지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규율은 모두 법규명령에 위임해 버린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공허하게 될 것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sup>12)</sup>

법규명령에 관한 한국헌법 제75조는 법규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여부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법규명령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즉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는 그 자체가 의회유보의

10) BVerfGE 33, 125.

11) 송동수,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제34집(2006. 12), 100면.

12) 의회유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결정으로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위헌소원인 헌재, 1999.5.27, 98헌바70; 이육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등 위헌소원판결에 관한 소고, 사법행정, 2004. 4, 17면.

원칙 아래 순수한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으로의 위임이 가능한 사항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이 먼저 적용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어찌든 의회유보의 원칙이든 포괄적 위임금지든 양자는 근본적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유보가 포괄적 위임금지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이다.

법리적으로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스스로 규율해야 할 사항과 법규명령을 통해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는 별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응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법규명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등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형식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원인자책임의 원칙상 문제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사업자에게 있다. 폐기물배출사업자는 스스로 처리(자가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다. 즉, 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배출자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라 함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자가 환경오염의 제거 또는 방지의무를 지며 제거 또는 방지비용 및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sup>13)</sup>, 이를 폐기물과 관련하여 보면 폐기물배출자책임을 포함한다.<sup>14)</sup>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나 배출자책임의 원칙은 다 같이 환경

13)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56면; 홍준형, 환경법, 2005, 104면.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환경오염의 제거의무나 비용부담을 저야한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에 합치하며 환경비용을 내부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임에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책임져주는 것은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민간처리업자의 통상의 처리수수료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해주는 것도 원인자책임의 원칙에도 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의 적정처리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항 규정과도 합치하지 않는다.

### 3. 수권의 범위 위반 문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는 “.....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의 위임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

14)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발생자책임원칙으로 논하기도 한다. 폐기물의 발생자란 1차적으로는 소비자이지만 오늘날에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한 자나 수입한 자도 폐기물발생자로 보고 있다. 제조자나 수입자가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지는 것은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도 저야한다는 이익-부담의 원칙에도 합치한다. 발생자책임의 원칙은 종래 소비자책임을 강조하는데에서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감량이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생자책임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로는 부담금, 사업자공동처리(포장폐기물),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경우의 책임제도, 폐기물수거료의 징수제도 등이 있다.

행령 제7조 제2항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이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이고, 폐기물처리 책임주체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의 처리책임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는 처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위법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는 국가의 법률과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sup>17)</sup>

조례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중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게 하는 것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책임을 폐기물배출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18조 제1항에 위배된다. 그리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18조 제1항이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의 위탁처리시 “제25조제3항에

15)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헌법재판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1996. 11, 183면 참조.

17) 지방자치법 제22조; 이광운, 의회유보와 조례에 대한 위임의 정도, 법률신문, 2003.9.18, 15면.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sup>18)</sup>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5. 자원순환형 사회이념의 미반영

오늘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의 확립이 각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통하여 종래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의 사회구조로부터 벗어나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효율적 이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자원의 소비가 억제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큰 방향이 되고 있다.<sup>18)</sup>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부의 폐기물 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련법령들도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오고 있다.<sup>19)</sup>

그런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대부분의 내용은 폐합성수지, 폐지, 폐고무 등 가연성폐기물이어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규정에 의해 매립처리되고 있다. 이는 자원순환형 사회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의 폐기물의 감량화 정책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폐기물이 발생단계에서 억제되거나 감량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과 최종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sup>20)</sup>

한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단순 매립처리는 폐기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방향과도 배치된다. 현재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

18) 독일과 일본도 자원순환형 사회시스템을 법제도로 정착시키고자 오래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위한 법제도로써 1994년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이 제정되었고, 일본에서는 2000년 6월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제정되어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19) 함태성,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 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제정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제30집), 2006, 469면 이하.

20) 김광임 외,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환경부, 2003, 14면; 환경부, 환경백서 2007, 669면 이하.

년~2011년)이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대책은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축소, 유통과정상의 감소, 소비단계에서의 감소, 처리단계에서의 정책, 건설폐기물의 감량, 유해 및 지정폐기물의 감량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sup>21)</sup>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까지도 자원화와 감량화를 위해 국민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단순 매립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IV. 사업장생활계폐기물법제의 개선방안

##### 1. 폐기물 분류의 법률규정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직접 분류하고 있을 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현재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기목 1)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기목 1)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양자는 처리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개념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도 반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시행규칙 [별표5]에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와 개념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직접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념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1) 환경부, 환경백서 2007, 659면 이하.

한편 동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1)상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바,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외에도 규율하여야 할 대상이 존재하므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법률에 규정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정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의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며 시행령에서 개별사업장을 규정하는 방안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개념의 구체화 및 명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 정의에서의 ‘성상(性狀)<sup>22)</sup>의 유사성’이라는 문구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상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2)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관할구역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처리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처리시설에서의 처리수수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보통이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있어서는 민간처리시설보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민간처리시설의 영업권이 침해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장폐기물임에도 생활폐기물과 같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폐기물처리체계와 과정에

22) 성상(性狀)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더욱 필요하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모호함이 크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의 성상은 매우 다양하여 생활폐기물의 성상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지 않은 사업장폐기물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섞여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핵심적 기준인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해결방안이 쉽지 않다. 이처럼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그 대안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성상이 유사」 하다는 표현 대신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 이라고 규정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업장내의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의 배출소를 예시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 역시 그 기본적인 사항은 현행처럼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명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이므로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그 처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위탁처리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처리시에는 적정한 처리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하여는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위탁계약의 상대방은 수집운반업자가 아니라 처리업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상이 유사”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것도 사업장내의 사무실, 기숙

사, 식당 등의 배출소에서 배출되는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의 폐기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상의 유사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장내의 폐기물이 전면적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둔갑하는 것은 아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내의 폐기물은 원칙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이며,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 생활계폐기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폐기물 처리의 일원화 및 민간처리

이론상 성상이 같은 폐기물은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도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하지 않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길은 열어 놓고 있지 않다. 앞으로 유해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유해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관리방식을 직영과 사기업에 의한 위탁관리로 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 사기업에 의한 위탁관리가 다양한 관리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sup>23)</sup>

23)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위탁은 실제에 있어서는 자주 위의 위탁방식의 변형된 형태로 행해진다. 운영계약(le contrat d'exploitation)은 직영의 한 형식이다. 이 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예산으로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운영비용을 지급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운영을 맡기고 총처리비용(le coût de traitement brut)을 지급한다. 소각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변형된 위탁방식이 있다. 하나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고 기업에게 총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수탁기업이 생산된 에너지의 판매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되는 대기는 에너지판매로 인한 수입만큼 감액되는 방식이다. 수탁기업에게 판매이익을 분배해주는 경우도 있다. 위탁(la concession)과 임대(l'affermage)는 생활폐기물처리의 위탁방식으로는 실제에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

오늘날 폐기물처리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의 처리기술이 많이 발전하였다. 앞으로 폐기물처리 등 환경산업의 국가간 개방과 경쟁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민간처리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sup>24)</sup>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관료사회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지도 않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sup>25)</sup> 민간처리시설의

는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에 있어서 기업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탁기업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계약이 소각장의 운영과 난방시설의 운영을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난방시설의 이용자가 기업에 대하여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이나 임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다른 위탁방식을 만들어냈다. 아직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목공사기업계약(Le marché d'entreprise de travaux publics), 운영협정부장기임대차(Le bail emphytéotique avec convention d'exploitation), 공공시설지배위임(Le mandat de maîtrise d'ouvrage)이 그것이다. 공동목공사기업계약은 판례의 산물이다. 즉, 생활폐기물의 관리가 위탁계약에 의해 위임된 경우에 있어서 국사원은 대가지급방식에 비추어 당해 계약의 법적 성질을 공동목공사기업계약으로 평가하였다. 공동목공사기업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업에게 어떤 시설의 건설과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를 조건으로 맡기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운영협정부장기임대계약은 공역무의 집행을 위한 장기임대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허용한 1988년 1월 5일 법률에 의해 창설되었다. 장기임대계약은 임차인에게 부동산물권을 부여하는 장기임대계약이다. 운영협정부장기임대계약은 장기임대행정계약과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운영협정으로 구성된다. 운영협정은 임차인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라 여러 관리방식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그 대가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된다. 공공시설지배위임은 지방자치단체가 혼합경제회사 또는 사기업에게 공공시설지배임무를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할 것을 위임하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24) 구자건 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및 민영화 방안마련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7 참조.

2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4조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업무대행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처리시설에 의한 대행은 민간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민간처리시설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 행위의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책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면서 실제 처리만을 민간처리시설이 대신하는 것이다. 위탁의 경우에는 처리권한과 책임이 이전되고, 처리의 효과는 원칙상 수탁자에게 귀속된다.<sup>26)</sup>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민간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조례로 정함이 없는 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처리시설에게 대행시킬 수 없다.<sup>27)</sup>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5.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개선방안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는 주민의 세금으로 배출사업자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는 것이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처리원가 이하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이므로 처리수수료를 감면하지 않아도 크게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봉투를 크게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혹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용 봉투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를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그 가격차이도 엄격히 두는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26)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08, 30면.

27) 이광윤, 의회유보와 조례에 대한 위임의 정도, 법률신문, 2003.9.18, 15면.

것이 필요하다.<sup>28)</sup> 사업장 배출자들에게는 가정에 비해 더 높은 비용부과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정용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장용 봉투도 배출시설계용과 생활계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봉투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입되어 처리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1일 폐기물배출량이 300Kg 이하인 것에 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너무 과대하게 많을 경우 이는 이 법의 취지에도 합당치 않으며 당연히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장용 봉투를 더 세분하여 압축용 봉투와 비압축용 봉투를 나누고, 압축용 봉투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종량제 봉투는 부피단위로 비용을 징수하는데, 압축용과 비압축용에 대한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감량화정책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압축으로 인한 지자체의 비용적자의 폭이 증가된다. 고가격의 압축용봉투의 보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출자로부터 관련비용을 부피단위로만 징수하지 말고 일정 무게 이상인 경우 무게를 기준으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해 처리되는 일반산업폐기물에 대해 특별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만하다. 특별수수료는 생활폐기물수거세(Taxe d'Enlèvement des Ordures Ménagères - TEOM)에 추가하여 별도로 부과한다. 다만, 특별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에게는 생활폐기물수거세를 감면할 수 있다.<sup>29)</sup>

## V. 맺음말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본 논문의 중심개념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수집·운반·보관·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28) 김광임 외,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환경부, 2003, 66면.

29) 일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1992년 7월 13일의 법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 즉, 사업장폐기물의 개념 및 종류, 그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식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향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의 구분을 법률에서 행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하면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관련된 사안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원칙상 민간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라. 1) 가)호에 의하면 1일 평균 100Kg 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매립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배출시설계든 생활계든 원칙상 소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소각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간처리시설에서 위탁하여 소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의 처리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봉투를 크게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혹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용 봉투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를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그 가격차이도 엄격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 배출자들에게는 가정에 비해 더 높은 비용부과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정용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장용 봉투도 배출시설계용과 생활계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봉투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입되어 처리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구자건 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및 민영화 방안마련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7
- 김광수, “독일의 폐기물법 개정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 주는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1
- 김광임 외,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환경부, 2003
- 김연태, “폐기물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제25권 제1호), 2003
- 박균성, “폐기물 관련법령의 기본구조”, 환경법연구(제26권 제2호), 2004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 송동수,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제34집), 2006
- 안종오, “유해폐기물 법제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광윤, “의회유보와 조례에 대한 위임의 정도”, 법률신문, 2003.9.18,
- 정 훈,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법의 규율방향”, 환경법 연구(제24권 제1호), 2002
- 정 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채영근,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환경법연구(제26권 제2호), 2004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외국폐기물관련 법령집, 2001
- 함태성,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 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제30집), 2006
- 홍정선, 행정법(하), 박영사, 2008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환경부, 환경백서 2007
- Thomas Rogaume, Gestion des déchets, ellipses, 2006
- Hoppe/Beckmann/Kauch, Umweltrecht(2.Auflage), C.H.Beck, 2000
- Horst Schlemminger·Claus-Peter Martens, German Environmental Law for

- Practitioners(2nd Edition), Kluwer Law, 2004
- Kloepfer, Umweltrecht(3.Auflage), C.H.Beck, 2004
- Peter G.G. Davies,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Law, ASHGATE, 2004
- Pschera, 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 Erich Schmidt, 2003
- Alexander Schink, Zukunft der kommunalen Abfallwirtschaft:  
Liberalisierungspotentiale aus kommunaler Sicht, AbfallR 2003, 29ff.
- Alexander Witthohn, Abfallrecht am Anfang des 21 Jahrhunderts – Neue Anforderungen an Entsorgung, Lagerung, NordÖR 2003, 45ff.
- Caroline von Bechtolsheim / Frank Wenzel, Überlassungspflichten für Gewerbeabfälle und Mindestgebühr, NVwZ 2006, 541ff.
- Helge Wendenburg,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Zulassung von Zwischenlagern unbehandelter Siedlungsabfälle, IR 2005, 124ff.
- Holger Thärichen / Rebecca Prella, Der Begriff der Haushaltsabfälle im allgemeinen und besonderen Abfallrecht, AbfallR 2006, 198ff.
- Holger Thärichen / Rebecca Prella, Ausschlussmöglichkeiten für Gewerbeabfälle von der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verantwortung, AbfallR 2005, 249–257
- Juliane Hilf / Thomas Roth, Rechts– und Umsetzungsprobleme der Gewerbeabfallverordnung, NVwZ 2004, 957ff.
- Peter Queitsch, Die neu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zur Entsorgung gewerblicher Abfälle, ZKF 2007, 49ff.
- Peter Queitsch, Gewerbeabfall–Verordnung – Nur ein Nullsummenspiel?, AbfallR 2004, 38ff.
- Peter Queitsch, Gewerbeabfallverordnung und Abfallgebühr, UPR 2003, 131ff.
- Timur Gelen / Ivonne Ohlbrecht, Mehr Klarheit im Wettkampf um die Verteilung der Gewerbeabfälle?, AbfallR 2004, 255ff.
- Walter Frenz, Energie durch Abfall, NuR 2003, 395ff.

淡路剛久 外(編), 企業のための環境法, 有斐閣, 2002

- 大塚直・北村喜宣(編), 環境法學の挑戦, 日本評論社, 2002  
山谷修作, 循環型社會の公共政策, 中央經濟社, 2002  
細田衛士・室田武(編), 循環型社會の制度と政策, 岩波書店, 2003  
阿部泰隆・淡路剛久, 環境法(第3版), 有斐閣, 2004  
河村寛治・三浦哲男(編), EU環境法と企業責任, 信山社, 2004

<Zusammenfassung>

Rechtliche Probleme und neue Konzepte  
in hausmüllähnlichen Gewerbeabfälle

Prof. Dr. Kyun-Sung Park  
Prof. Dr. Dongsoo Song  
Prof. Dr. Tae-Seong Hahm

Abfall im Sinne des koreanischen Abfallrechts sind alle Gegenstände, die beweglich sind, sofern der Besitzer des Gegenstandes sich dieses Gegenstandes entledigt. Als Hausmüll werden Abfälle definiert, die in Haushalten anfallen und mittels bestimmter Behältersysteme durch die kommunale Hausmüllabfuhr oder beauftragte Entsorgungsunternehmen erfasst (Hol- und Bringsysteme) und der weiteren Entsorgung zugeführt werden. Hausmüllähnliche Gewerbeabfälle sind Abfälle, die aus größeren Gewerbebetrieben und Institutionen stammen und aus ähnlichen Stoffen wie Hausmüll bestehen. Hierzu zählen auch die Speiseabfälle aus größeren Gastwirtschaften. Sie sind jedoch keine produktionsspezifischen Abfälle sowie verwertbare Verpackungen und Kartonagen etc. Die wirklich anfallenden Mengen an hausmüllähnlichen Gewerbeabfällen sind weitgehend unbekannt. Es ist nicht exakt definiert, welche Abfälle aus dem Gewerbe den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n als gemischte Siedlungsabfälle angedient

werden oder angedient werden dürfen. Die Entsorgung der hausmüllähnlichen Gewerbeabfälle ist mit Inkrafttreten des koreanischen Abfallgesetzes zum Gegenstand des Streites zwischen privaten und kommunalen Entsorgern geworden. Dabei geht es um die Frage, ob hausmüllähnliche Gewerbeabfälle Abfälle im Sinne des Hausmüll sind. Hausmüllähnliche Gewerbeabfälle sind gemäß § 14 AbfG-Rechtsverordnung bevorzugt einer möglichst hochwertigen Verwertung zuzuführen. Nicht verwertbare Abfallfraktionen sind dem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 (Abfallwirtschaftsunternehmen, Kommune, Verband) zu überlassen. Wird Hausmüllähnlicher Gewerbeabfall gemeinsam mit dem Hausmüll entsorgt, werden dafür Müllgroßbehälter eingesetzt.

주 제 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처리  
Key Words Abfallrecht, Abfall, Hausmüll, Hausmüllähnliche Gewerbeabfälle, Entsorgung